

## ④ 大學의 自律性保障

- 現行: 없음.
- 근거: 없음
- 판례: 830(5)

⑤ 國家는 大學의 自律性을  
保障한다.

- 大學의 自律性은 教育의 自主性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
- 學問의 自由속에 研究 및 教授의 自由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굳이 新設할 필요성은 없음.